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79

발의연월일: 2024. 6. 24.

발 의 자: 김예지·강대식·김선교

한지아 · 엄태영 · 최수진

서천호 · 서미화 · 최형두

박덕흠 • 배현진 • 김장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을 지원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공공장소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출입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미흡하기 때문임.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동반출입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공익광고 등의 홍보사 업을 실시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40조 등).

법률 제 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전단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을 "거부하여서는"으로 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0조 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사업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제90조제3항제3호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을 "거부한"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 보급 지원 등) ①・② (생 략) 보급 지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 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 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 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 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 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 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 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 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 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 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0조의2(장애인 보조견 인식개 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 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개 선을 위하여 공익광고 등 홍보

제90조(과태료) ①・② (생 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2. (생략)
- 3.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조 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 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3의2. ~ 7. (생략)

④ (생 략)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사업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0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1. • 2. (현행과 같음)
3
<u>거부한</u>
3의2. ~ 7.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